



# 미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 DOJ의 카르텔 조사를 중심으로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변호사 | 김 병 배



## I.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주요 이슈

### 1.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Antitrust Enforcement In A Distressed Economy)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과연 적절한 경제체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전 의장인 앤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미국하원청문회(2008년 10월 23일)에서 “시장자유주의(Free Market Ideology)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sup>1)</sup> EU 경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마리오 몬티(Mario Monti)도 2009년 6월 American Antitrust Institute가 주최한 회의에서 “최근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택금융 전담기관인 파니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국유화 되었으며,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같은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이 파산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인 시티그룹(Citi 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AIG, 자동차회사인 GM·크라이슬러와 같은 대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약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통하여 투입되었다.<sup>3)</sup> 이에 대응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의료(Healthcare), 에너지, 통신, 교통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기침체 하에서는 경쟁법 집행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4)</sup> 이에 대하여 미국 경쟁당국은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쟁법 집행의 완화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있다. 1929년의 대공황 직후인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1) Greenspan testified that “..yes, I found a flaw. I don't know how significant or permanent it is, but I have been very distressed by the fact.” See Edmund Andrews, ‘Greenspan concedes error on regulation,’ *New York Times*, October 23, 2008.

2) Mario Monti stated that “In fact, there has been a huge loss of credibility of the market economy itself, of which competition policy is part and parcel,” available at [http://www.antitrustinstitute.org/archives/files/Monti%20Keynote\\_081220091621.pdf](http://www.antitrustinstitute.org/archives/files/Monti%20Keynote_081220091621.pdf).

3) See Edmund Andrews, ‘Geitner Says Bailout Programs are Shrinking.’, *New York Times*, September 10, 2009

Roosevelt)는 1933년 6월 ‘산업진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NIRA)에 서명하였다. NIRA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표준’(Industry Codes)의 제정을 허용하고, 이러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면제하였다. 산업표준은 가격경쟁 제한, 생산량 및 투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주요 산업의 ‘카르텔화’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표준을 허용한 논거는, 이를 통하여 확보된 추가 이익을 임금 인상을 통하여 노동계와 나눈다는 것이었다. 미국 법무부(DOJ : Department Of Justice)의 반독점국은 해당 산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상을 참여할 경우, NIRA에 의한 산업표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법을 집행하였다. 철강, 정유, 자동차, 광업, 임업 등 주요 산업이 산업표준의 적용을 받았고 그 결과, 경쟁은 사라지고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의 후생보다 우선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량 감소, 가격 인상,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sup>5)</sup>

NIRA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인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는 “NIRA는 1930년대 중반의 생산량 감소가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 경제의 자동조절기능(Economy’s Self-correction Mechanism)이 작동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sup>6)</sup> 대공황 시기에 NIRA의 산업표준 적용을 받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비교한 해럴드 콜(Harold Cole)과 리 오하이언(Lee Ohanian)의 연구 결과도 “대공황 기간 중에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회복되었는데도 GNP, 소비, 투자, 노동시간은 매우 낮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NIRA가 경제회복 지연에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설명한다”고 평가하였다.<sup>7)</sup> NIRA는 결국 ‘과다한 입법권의 위임이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sup>8)</sup>

DOJ의 독금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Antitrust)인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는 2009년 5월 12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의 연설에서 “비효율적인 정부규제(Ineffective Government Regulation), 잘못 디자인된 규제 완화(Ill-considered Deregulatory Measures), 부적절한 경쟁법 집행(Inadequate Antitrust Oversight)이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1930년대의 경험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첫째, 경기침체 시에도 경쟁시장(Competitive Market)을 대체할 제도는 없다는 것과 둘째, 적극적인(Vigorous) 경쟁법 집행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sup>9),10)</sup>

4) Carl Shapiro, Deputy Assistant General for Economics, Antitrust Division of DOJ, May 13, 2009, Competition Policy in Distressed Economy, ABA Antitrust Symposium: *Competition as Public Policy*; “the current crisis does force us to reconsider how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fashioned during a time of economic distress.”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45857.htm>.

5) “Vigorous Antitrust Enforcement in this Challenging Era,” Christina A. Varney,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DOJ), Remarks as Prepared for the United States Chamber of Commerce, May 12, 2009,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45777.htm>

6) Christina Romer, “Why Did Price Rise During the 1930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9(1), 167–199, p. 197.

7) Carl Shapiro, *supra* 4., quoting Harold Cole and Lee Ohanian, “New Deal Policies and the Persistence of the Great Depress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4): 779–815, (2004).

8) A.L.A.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295 U.S. 495 (1935).

9) Varney, *supra* 5.

## 2. 셔먼법 2조의 집행 방향(Enforcement Regarding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 경쟁법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특히, 셔먼법 2조에 근거한 단독기업의 독점화(Monopolization) 또는 독점화 기도(A Attempt to Monopolize)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반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미국반독점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에 전달한 입장(Statement)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쟁법 집행은 최근 반세기의 어느 행정부보다도 약한 수준이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쟁법 집행을 다시 강화하겠다(‘Reinvigorate Antitrust Enforcement’)”고 밝힌 바 있다.<sup>11)</sup> DOJ가 셔먼법 2조 위반에 대하여 조사 개시한 사건 수를 보더라고 1992~1995년에 48건, 1996~1999년에 51건, 2001~2004년에 41건, 2005~2008년에 17건으로, 최근 4년간 단독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DOJ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는 2006년 6월부터 1년간 공동으로 셔먼법 2조의 단독기업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DOJ는 청문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단독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보고서’(DOJ 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13)14)</sup>

오바마 행정부의 첫 DOJ 독점차관보인 크리스틴 바니는 “DOJ 보고서가 단독기업의 배제적 또는 약탈적 행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과대평가하고 경쟁 및 시장왜곡효과나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법 집행이 될 경우 소비자는 가격 상승, 제품 다양성 감소, 기술 혁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DOJ 보고서가 더 이상 DOJ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표명하였다.<sup>15)</sup> 바니 차관보는 ① DOJ 보고서에서 단독행위의 셔먼법 위반 여부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효율성 비교 테스트(Disproportionality Test)<sup>16)</sup>가 경쟁제한적인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 당국과 법원의 법 집행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있으며 ② 경쟁제한 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

10) 경기침체시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 최근까지 소위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경험한 일본에 대해서, 포터(Porter)와 사키카바라(Sakikibara)는 ‘약한 경쟁정책(Weak Competition Policy)이 경기침체의 지속에 기여하였다’라고 평가한바 있다. See Carl Shapiro, supra 4., quoting Michael Porter and Mariko Sakikibara, “Competition in Japa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1), 27050 (2004), p. 47.

11) *Statement of Senator Barack Abama for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antitrustinstitute.org/Archives/pres01ashx>.

12) See, ANTITRUST DIVISION WORKLOAD STATISTICS, FY 1999–2008,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workstats.pdf>

13) *Competition &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U.S. DOJ, available at [www.usdoj.gov/atr/public/reports/236681.htm](http://www.usdoj.gov/atr/public/reports/236681.htm).

14) DOJ 보고서에 대하여 FTC는 ‘그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으며, 하버(Harbour), 레이보위츠(Leibowitz), 로쉬(Rosch) 등 3인의 상임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하여 “DOJ 보고서의 내용은 독점적 기업의 이익을 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고 있으며, 셔먼법 2조의 집행을 현저히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See <http://www.ftc.gov/opa/2008/09/section2.shtm>

15) Varney, supra 5.

16) 효율성 비교 테스트는 ‘기업의 행위로 인한 경쟁에의 폐해가 소비자와 기업에 주는 긍정적 효과보다 현저하게(Disproportionally) 클 경우에만 경쟁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명백하거나 현저하게 경쟁제한적인 행위만이 법 위반으로 차별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게 많은 안전지대(Safe Harbors)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7)</sup>

### 3. 셔먼법 1조의 집행 강화(Strengthening Enforcement Of Cartel Investigations)

셔먼법 1조 위반인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은 경기침체 하에서도 여전히 DOJ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sup>18)</sup> DOJ의 셔먼법 1조 위반에 대한 조사 시작 사건 수를 보면 2001~2004년에 395건, 2005~2008년에 285건이다. 연도별로 볼 때 2008년에는 76건으로 2005년의 118건, 2006년의 104건 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sup>19)</sup>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는 시장에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 기업들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인하 회피를 위하여 카르텔에 의존할 유인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일부 기업의 도산으로 사업자가 줄어 들어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공급자간 카르텔 형성 및 이탈자 감시가 쉬워지게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일부 산업에 투입되고 공공 지출이 급격히 확대 됨에 따라, 공적 자금의 배분과정이나 공공입찰과정에서 카르텔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카르텔에 대한 감시,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기관의 협조 강화, 카르텔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 강화가 예상된다.<sup>20)</sup>

## II. DOJ의 카르텔 집행 동향

### 1. 최근의 제도 개선

#### (1) DOJ-INS MOU(1996)

미국 이민법은 미국에서 중범죄(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외국인이 DOJ와의 Plea Bargain Agreement(형벌합의)를 통하여 감경된 형벌이나 형집행 면제(No-jail)에 합의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단순한 관광목적이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미국 내 여행이 필요한 외국기업 임원들은 DOJ와의 형벌합의에 소극적이었고, DOJ는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외국기업의 임원을 미국으로 데려와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DOJ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에 미국 이민국(Immigration and

17) Varney, *supra* 5.

18) *Id.*

19) ANTITRUST DIVISION WORKLOAD STATISTICS, FY 1999–2008, *supra* 12.

20) Varney, *supra* 5.

Naturalization Agency : INS)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DOJ와 형벌 합의를 한 외국인이 그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DOJ-INS 간의 MOU는 국제 카르텔에 가담한 외국기업의 임원들에게 DOJ와의 형벌합의에 참여할 유인을 증가시켰고, 그 이후 DOJ의 국제카르텔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sup>21)</sup>

## (2) 형벌 상한 및 양향기준의 상향 조정, 감청(Wiretapping) 허용, Detrebling

미국은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종전의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인상시켰으며, 개인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종전의 3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개인 벌금 상한은 종전의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시켰다.<sup>22)23)</sup> 형벌 상한의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형벌 양향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도 개정(2005년)하여 카르텔에 대한 기준형벌을 높였다. 2006년 3월에는 카르텔을 감청(Wiretapping)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카르텔 가담혐의(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연방수사국)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sup>24)</sup> 또 자진신고 감면대상이 된 기업에게는 다른 카르텔 가담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를 도와준다는 조건 하에,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이 아니라 실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하였다(Detrebling).<sup>25)</sup>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DOJ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과 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프로그램(Leniency Program)과 형벌합의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sup>26)</sup>

## 2. 카르텔 사건 처리 동향

### (1) 개인 형벌 강화

DOJ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 임원에 대한 징역형 부과(Jail Sentence)를 강화하고 있다.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 임직원에 대한 벌금(Fine)과 같은 금전벌(金錢罰)은 기업이 대신 납부하거나 보상하여 줄 수 있으나,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기업이 대신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은 카르텔의 조사 및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7)</sup> DOJ는 1999년 5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호프만 라

21) "CRIMINALIZATION OF CARTEL CONDUCT- THE CHANGING LANDSCAPE," Belinda Barnett, Senior Counsel to the Deputy Assistant General to Criminal Enforcement, US DOJ, Address to the Joint Federal Court of Australia/Law Counsel of Australia(business Law Section) Workshop (April 3, 2009),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47824.htm>.

22)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은 카르텔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18 U.S.C. § 3571(d).

23) 개인에 대한 징역형 상한은 1890년 셔먼법 제정 시는 1년 이하였으나, 1974년에 3년으로 상향되었다.

24) USA Patriot Improvement & Reauthorization Act of 2005, 18 U.S.C. § 2518.

25)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18 U.S.C. § 3571(d).

26) Belinda Barnett, *supra* 21.

27) *Id.*

로슈(Hoffmann-La Roche) 임원에게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징역형(4개월)을 부과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약 36명의 외국인이 국제카르텔 가담이나 조사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sup>28)(29)</sup> 또한, 1999년 이전까지는 카르텔 가담기업 1개 당 1명의 자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였으나,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호프만 라 로슈와 바스프(BASF) 각각 3명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한 이후로 1개 기업의 여러 명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2006년의 DRAM 카르텔 사건에서 6명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기도 하였다.<sup>30)</sup> 한발 더 나아가, DOJ는 카르텔 사건의 형벌합의과정에서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에게는 형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31)</sup> 그 결과,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총 징역형 부과기간은 2002년에 약 350개월에서 2005년에는 440개월, 2007년에는 약 1,050개월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징역 부과기간도 2002년에 18개월, 2005년에 24개월, 2007년에는 31개월로 증가하였다.<sup>32)(33)</sup>

## (2) Plea Bargain 활용

DOJ는 카르텔 조사 및 처벌과정에서 형벌합의를 크게 활용하고 있다. DOJ가 최근 20년간 처리한 카르텔 사건의 90% 이상에서 형벌합의제도가 이용되었다.<sup>34)</sup> 형벌합의제도는 기업, DOJ, 그리고 법원 모두에게 득(得)이 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35)</sup> 즉, 기업의 경우 형벌 감소, 조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DOJ는 조기의 협조 확보, 다른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조사 촉진, 그리고 조사인력 등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활용 등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법원의 경우는 제한된 사법자원의 절약이 가능하다.<sup>36)</sup>

## (3)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 강화

DOJ는 국제카르텔 조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외국 경쟁당국과의 정보 교환, 동시 조사(Simultaneous Dawn-raids)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카르텔에 가담한 임직원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

28) *Id.*

29) 카르텔에 가담한 미국인에 대한 최초의 징역형 부과는 1921년에 건축물 입찰담합에 참여한 4명에게 총 10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 것이었다. See *United States v. Alexander & Reid Co.*, 280 Fed. 924, 927 (S.D.N.Y. 1922).

30) Belinda Barnett, *supra* 21.

31) *Id.*

32) 2008년의 경우, 총 징역형 부과기간은 478개월, 1인당 평균 징역 부과기간은 25개월로 2007년보다 다소 낮아졌다. See ANTITRUST DIVISION WORKLOAD STATISTICS, FY 1999–2008, *supra* 12.

33) 외국인에 대한 최고 징역형 부과는 2007년 12월 마린호스 카르텔 사건에서 영국 던롭사 임원에게 부과한 30개월이며, 한국인에게 부과한 최고 징역형은 2007년 5월 DRAM 카르텔 사건에서 삼성전자 임원에게 부과한 14개월이다.

34) “*Cartel Settlements in the U.S. and EU: Similarities, Differences & Remaining Questions*,” Ann O’Brien, Senior Counsel to the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riminal Enforcement, U.S. DOJ, Address to the 13th Annual Competition Law and Policy Workshop (June, 6, 2008),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35598.htm>.

35) *Id.*

36) *Id.*

터풀(Interpol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을 통하여 국제 수배(Red Notices)하기도 하며, 사법공조협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요청(Extradition)도 활용하고 있다.<sup>37)</sup>

2007년 12월의 마린호스(Marine Hose) 카르텔 사건에서, DOJ는 영국 경쟁당국(Office of Fair Trading) 및 EU 경쟁당국, 그리고 미국 및 영국의 법원과 협조하여, 카르텔에 가담한 영국 던롭(Dunlop)사 직원 3명에게 형벌합의를 통하여 미국과 영국에서의 조사에 협조하게 하고, 미국에서 징역형(20~30개월)을 부과했다. 그리고 그 징역형의 복역을 유예한 후 영국으로 보내어 영국 법원에서 징역형(30~36개월)을 부과한 후 영국에서 징역형을 살도록 하기도 하였다.<sup>38)</sup>

### 3. DOJ의 카르텔 조사 관련 통계

2008 회계연도<sup>39)</sup>에 DOJ 반독점국이 부과한 벌금액은 6억 9,500만 달러로서 2006년 4억 7,000만 달러, 2007년 6억 1,600만 달러보다 많았으며, 이는 1999년 9억 6,9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sup>40)</sup> DOJ는 1997년 이후 총 50억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중 90% 이상이 국제카르텔과 관련된 것이었다.<sup>41)</sup> 2008년 10월 말 현재 DOJ가 기소대배심(Grand Jury)를 통하여 조사 중인 사건 수는 137건으로, 이는 1992년 이후 최고로 많은 것이며, 이 중 약 50여 건이 국제카르텔 관련 사건이다.<sup>42)43)</sup> 기소대배심을 통하여 신규로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38건, 2007년이 34건, 2008년이 3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44)</sup>

## III. 마무리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민주당의 정책성향,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 바니 차관보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부시 행정부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집행과정이나 금융기관, 자동차회사 등 대기업의 회생을 위한 지원과정에서 반(反)경쟁적 요소가 노정(露呈)될 경우에도 미국 경쟁당국이 경쟁법의 원칙을 고수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경쟁법은 시장이 형성되어 작동되

37) Belinda Barnett, *supra* 21.

38) "Recent Developments, Trends, and Milestones in The Antitrust Division's Criminal Enforcement Program", Scott Hammond, Deputy Assistant General for Criminal Enforcement for U.S. DOJ, address to the 56th ABA Annual Spring Meeting (March 26, 2008),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32716.htm>.

39)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에서 9월까지이며, 2008 회계연도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이다.

40) 1999년에는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호프만 라 로슈에 5억 달러, 바스프에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있었다.

41) . Hammond, *supra* 38.

42) *Id.*

43) ANTITRUST DIVISION WORKLOAD STATISTICS, FY 1999–2008, *supra* 12.

44) *Id.*

는 것을 전제로 시장의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및 남용이나 담합 등을 예방, 조사,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데, 시장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서 시장의 붕괴 방지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이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인 정부 또는 기업 행태에 대하여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러한 상황에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정부기관이나 일반 대중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DOJ의 바니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의료,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규제 개혁과정에서 생기는 경쟁 관련 이슈(Competition-related Issues)에 대해 DOJ는 정부기관간 토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경쟁주창적(Competition Advocacy)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산업분야 이슈에 대한 경쟁당국의 견해는 이러한 이슈의 해결에 필요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입법 과정의 전문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접근방식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sup>45)</sup>

카르텔에 대한 조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경쟁당국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국제카르텔 조사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될 것이다. ICN이나 OECD 등 다자간 기구나 FTA나 경쟁당국간 협정 등 양자간 채널을 통하여 개인처벌과 국제공조의 강화를 강조할 것이며,<sup>46)</sup> 이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과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이나 정부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담합이나 사기 등의 예방 및 조사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한국에서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지출이 확대된 점과 수요 침체로 인한 가격 인하 압력 회피를 위하여 기업들의 담합 유인이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수요 감소된 산업분야와 정부 입찰부문에서의 담합 적발 및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독점화(Monopolization)나 독점화 기도(Attempt To Monopolize) 등 셔먼법 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 인터넷, 유·무선 통신 등 IT 분야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서비스, 바이오테크(Biotech), 농업(우유 등 낙농제품, 종자, 도축 및 농산물 유통 등), 의료·제약 등의 분야에서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기도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새로운 사건의 속수가 예상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형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반도체, 단말기 등 일부 IT 품목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의 견제가 시작된다면 셔먼법 2조 위반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기업을 M&A 할 경우, 전보다 강화된 심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 제4회 총정법률포럼 및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WSGR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5) Varney, *supra* 5.

46) 호주, 영국, 브라질, 일본, 아일랜드 등의 경쟁당국도 카르텔 가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See, Belinda Barnett, *supra* 21.